

# 보도자료

보도일시	2021. 3. 26(금) 조간 *방송통신인터넷 25(목) 12:00	배포일시	2021. 3. 25(목) 08:30
담당	파이터치연구원 원장 라정주(02-6190-8971, 010-8857-7986)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추문갑(02-2124-3013)		

## 기업 상속세율 50% 인하 시 일자리 약 27만개 창출

- 가업상속공제제도, 업종변경 제한 등 완화 필요 -

□ 중소기업중앙회(회장 김기문)와 (재)파이터치연구원(원장 라정주)은 “기업 상속세율을 50% 인하하면, 일자리가 26만 7천개 창출되고 기업 매출액이 139조원 늘어난다”는 연구결과를 25일(목) 발표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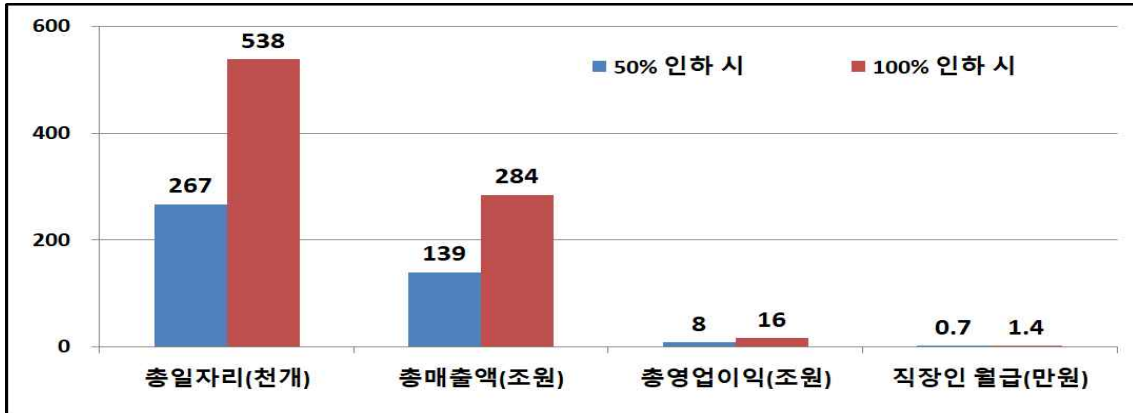
※ 분석모형: 소규모 기업부터 대규모 기업으로 나누어지는 기업분포를 반영한 동태일반균형모형(현재의 의사결정이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부분이 아닌 경제 전체를 고려하는 모형)

○ 기업 상속세율을 50% 인하하면, 총일자리, 총매출액, 총영업이익, 직장인 월급이 각각 267천개, 139조원, 8조원, 0.7만원 증가한다. 기업 상속세율을 100% 인하하면, 총일자리, 총매출액, 총영업이익, 직장인 월급이 각각 538천개, 284조원, 16조원, 1.4만원 증가한다.

※ 제시된 수치: 가업상속세율 인하 전 대비 인하 후 경제가 안정을 찾을 때까지의 변화량

- 그 이유는 기업 상속세율을 인하하면, 자본 1단위를 자식에게 더 물려 줌으로써 얻는 한계효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자본(기업)을 더 늘리게 된다. 자본량이 증가하면,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노동수요량(일자리)도 늘어난다. 생산요소인 자본량과 노동수요량이 증가하면, 생산량도 증가한다. 생산량이 증가하면, 이에 상응하여 매출과 영업이익도 늘어난다. 또한, 노동시장에서 노동수요량이 증가하면, 임금도 상승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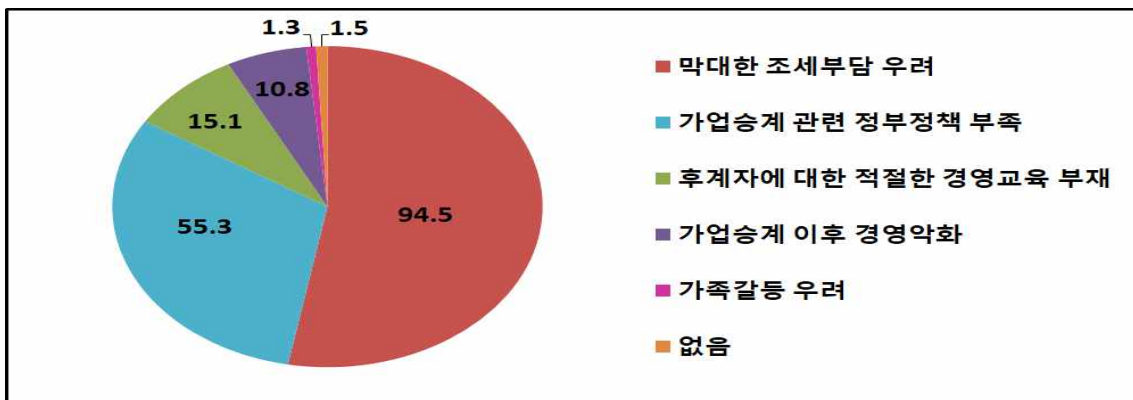
<그림1> 기업 상속세율 인하에 따른 주요 파급효과



\* 출처: 파이터치연구원

- 공동 연구자인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장과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 본부장은 “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기업 승계시 상속세로 인해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”고 강조했다.
- 중소기업중앙회가 2020년 12월 7일부터 18일까지 5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가업승계 실태조사에 따르면, 전체의 94.5%(복수 응답)가 기업 승계 시 상속세와 같은 조세에 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.

<그림2> 기업승계 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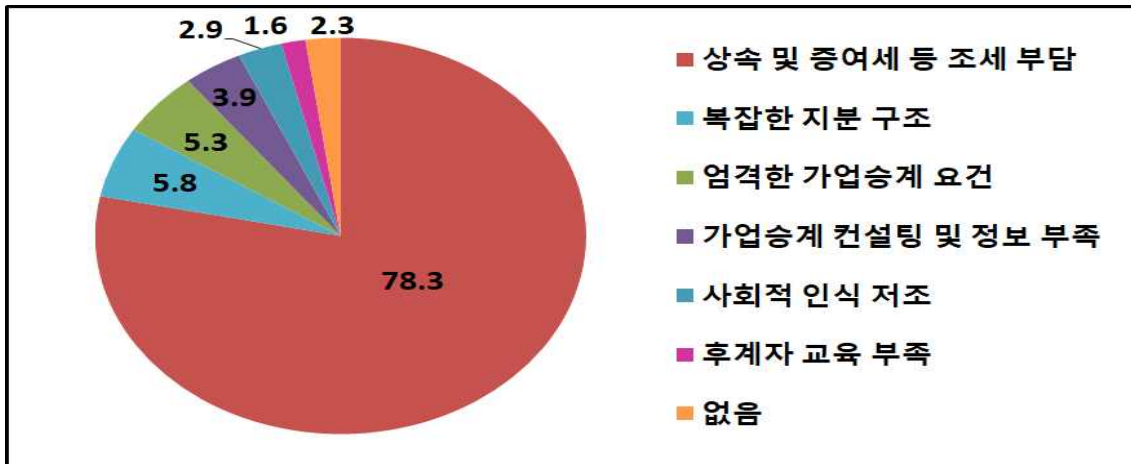


\* 주: 업력 10년 이상 중소기업 500개사의 복수 응답

\* 출처: 중소기업중앙회, 2020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(2020.12.7~18)

-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2019년 7월 18일부터 10월 4일까지 중견기업 1,4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에서도 전체의 78.3% (단수 응답)가 기업 승계시 상속세와 같은 조세에 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확인됐다.

〈그림3〉 기업승계 시 중견기업의 애로사항



\* 주: 중견기업 1,400개사의 단수 응답

\* 출처: 산업통상자원부·한국중견기업연합회, 2019 중견기업 실태조사 (2019.7.18~10.4)

- 라 원장과 추 본부장은 “그리스의 경우 2003년 기업 상속세율을 20%에서 2.4%로 크게 인하하여 기업상속을 한 가족기업의 투자가 약 40% 증가했다”며, “현행 기업상속세율을 과세표준 전 구간에 걸쳐 인하해야 한다”고 주장했다.
- 그러면서 상속세율 인하는 사회적 합의가 뒷받침되어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차선책으로 중소·중견기업의 기업승계 원활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기업상속 공제제도를 현실성 있게 보완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.
  - 첫째, 기업상속공제 최대주주 지분을 요건을 비상장기업은 30%, 상장기업은 15%로 완화하고, 급변하는 소비자 트렌드 변화에 맞는 혁신적인 신제품 개발이 가능하도록 중분류로 제한되어 있는 업종변경 요건을 대분류로 확대하거나 폐지해야 한다.
  - 둘째, 계획적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해 100억원인 기업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한도를 기업상속공제와 동일한 500억원으로 확대하고, 적용대상도 법인에서 개인기업까지 확대해야 한다.

붙임 : 기업 상속세 감면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(연구보고서) 1부. 끝.